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지연 의원 외 7명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 위원회 수를 증원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을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현 행 :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 정 :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결산검사 위원회 정수 증원(안 제2조)

- 현 행 : 3명 이상 5명 이하
- 개 정 : 5명 이상 7명 이하

○ 결산검사 선임방법 및 절차 단서 삭제(안 제3조 제1항)

○ 결산검사 선임방법 및 절차 단서 신설(안 제3조 제3항)

○ 결산검사 장소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결산검사 위원 일비 증액(별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 위원회의 정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증원하여, 1.5조 재정 규모의 결산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였으며, 비슷한 재정 규모의 타 지자체의 위원 수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임.
- 제3조 결산 검사 선임 방법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이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결산 검사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세밀한 결산 검사가 기대되는 한편, 구미시의 세입·세출 등 재정 현황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부재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결산 검사 진행 차질이 우려됨.
- 또한, 제3조 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바, 결산 검사가 진행될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의원 10만원, 의원 외 20만원으로 증액하여 회계사 등 전문가 위촉 등으로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슷한 재정 규모의 타 지자체의 결산검사 위원 일비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임.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회 주도적인 결산 검사가 기대되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5. 참고사항

○ 도내 타 지자체 결산검사 위원 규정 현황

구 분	위원의 정수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일비(원)
경북도	7명~20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200,000
포항시	3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경주시	3명~6명 이내	의회에서 선임 / 단체장 추천 ×	150,000
안동시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명 추천 임의규정	120,000
구미시	3명~5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명 추천 임의규정	100,000
영주시	3명~5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20,000
영천시	3명~10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2명 추천 임의규정	120,000
상주시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문경시	3명~10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명 추천 임의규정	100,000
경산시	3명~10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2~4명 추천 임의규정	관련자격증 소지 200,000원, 기타 120,000원
의성군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3명 추천 임의규정	150,000
청송군	3명~5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영양군	3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영덕군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50,000
칠곡군	3명~5명 이내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예천군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추천 ×	100,000
봉화군	4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명 추천 임의규정	100,000
울진군	3명	의장이 추천 / 단체장 1명 추천 임의규정	150,000

○ 유사 재정규모 타 지자체 결산검사 위원 정수 및 일비 현황

시 군	위원의 정수	위원 일비(원)	비고(예산)
군산시	5명 이내	100,000	1.4조
양산시	3명~10명	150,000	1.5조
여주시	5명 이내	200,000	1.3조
원주시	5명 이내	150,000	1.5조
익산시	7명 이내	150,000	1.5조
전주시	5명 이내	150,000	2.2조
진주시	7명 이내	150,000	1.8조
천안시	5명 이내	120,000	2.1조

※ 구미시 예산규모 : 1.5조 (2022년 본예산 기준)